

의안번호	2204174
의 퇴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9.
추 계 번호	24A3975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8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도로,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
 - 개정안은 이러한 기반시설 외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특정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해당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지원 범위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
로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은 주요 기반시설과 기타 기반시설로 구분되어 있음¹⁾
 - 주요 기반시설 지원으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,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,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등이 해당함(2024년 예산 기준)
 - 기타 기반시설 지원은 송도11-1공구 공동구 설치, 세풍산단 진입도로,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등이 해당함(2024년 예산 기준)

[표 1]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예산
주요 기반시설 지원	3,689	14,500	13,056	17,800	8,425
기타 기반시설 지원	30,475	53,871	31,441	43,073	34,55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1) 사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인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(예타대상)은 주요 기반시설, 해당 금액 미만은 기타 기반시설로 구분함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